



미국의 재소자 노동: 법적 근거, 실태, 그리고 사례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① - 미국

김정명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캠퍼스 사회학 박사과정)

■ 머리말

재소자 노동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기 시작한 1796년 이래로, 미국의 재소자들은 낮은 수준의 임금과 수감 기간의 감소를 위해서 현재까지도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수행하여 왔다. 이에 따라 미국 사회 내에서 재소자 노동에 대한 공적인 담론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며, 재소자 노동의 사례들 또한 간략하게나마 공유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미국 내 재소자 노동의 법적 근거와 도덕적 논쟁점들, 그리고 재소자 노동의 실태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재소자 노동의 법적 근거

앞서 언급하였듯이 재소자 노동의 법적 근거는 17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욕 주에서 발의되어 통과된 이 법안은 뉴욕 주 안에서만 지속적으로 재소자 노동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보다 더 근본적인 법적 근거는 미국 헌법의 13차 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1865년에 해당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노예 제도를 공식적으로 철폐하면서도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보상 없이도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예외를 두어

는 형량 감소와 아주 낮은 수준의 임금을 얻기 위해서 노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의 노동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많은 인구를 수감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수치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230만 명이 수감되어 있으며, 이는 성인 인구의 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³⁾ 이들 중 다수는 약물 관련 범죄 등 직접적으로 피해자나 폭력 등이 연관되지 않은 종류의 범죄로 인해 수감된 경우가 많으나, 반복되는 범죄에 대하여 무조건 수감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명 「삼진아웃 법(Three-Strikes Law)」 등으로 인하여 수감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⁴⁾

이렇듯 많은 재소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노동이 과연 자발적인 것인가에 대한 비판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앞서 소개하였듯이 미 헌법 13차 개정안은 정부가 재소자들에게 강제적으로 노동하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되고 있다. 물론 정부 측은 강제로 노동을 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재소자들이 교도관들의 압력에 못 이겨 노동을 하게 된다는 실태들이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⁵⁾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을 구하기 쉽지 않은 농업이나 고위험군업 등의 산업에서 재소자들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수감률이 높아지는 것이 재소자들의 노동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구조로 이어지게 된다.⁶⁾ 재소자 노동이 재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⁷⁾ 이러한 장점이 일부

3) Prison Policy Institute, "Mass Incarceration: The Whole Pie 2017," Retrieved on January 21st, 2018, <https://www.prisonpolicy.org/reports/pie2017.html>.

4) Office of Public Defender, San Diego County, "Three Strikes Law - A General Summary," Retrieved on January 21st, 2018, https://www.sandiegocounty.gov/content/sdc/public_defender/strikes.html.

5) The New York Times(2011.3.6), "Inmate Labor," Retrieved on January 21st, 2018, <http://www.nytimes.com/2011/03/07/opinion/107inmate.html>.

6) TakePart(2014.4.14), "A Disturbing Trend in Agriculture: Prisoner-Picked Vegetables," Retrieved on January 21st, 2018, <http://www.takepart.com/article/2014/04/14/prison-ag-labor>.

7) The New York Times(2017.10.20), "Think Prison Labor is a Form of Slavery? Think Again," Retrieved on January 21st, 2018, <http://www.latimes.com/opinion/op-ed/la-oe-bozelko-prison-labor-20171020-story.html>.

의 직무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삶을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다는 비판도 존재한다.⁸⁾⁹⁾

또한 미 헌법 13차 개정안이 경우는 유급 노동을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과 노동자 보호 기준들이 재소자 노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재소자 노동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재소자들은 그들의 노동으로 인하여 평균적으로 시간당 16센트에서 93센트(한화 약 170원에서 1,000원)를 얻게 되며,¹⁰⁾ 텍사스 주나 아칸소 주의 경우 노동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¹¹⁾ 현재 사기업이나 정부출자기관 등이 수감 산업 발전 자격 프로그램(Prison Industry Enhancement Certification Program)에 참여하면 정부는 추가적인 수입을 올리게 되는데, 2016년 기준으로 미국 정부 교정국(Bureau of Prisons)은 매트리스, 군용 장비 등을 납품하여 50억 달러(한화 50조 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재소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만을 얻게 되며, 그나마 이 소득의 약 80%는 세금과 수감 비용 명목으로 공제된다.¹³⁾ 게다가 민간 노동자들을 보

8) National Review(2017.1.11), "Give Working Prisoners Dignity — and Decent Wages," Retrieved on January 21st, 2018, <http://www.nationalreview.com/article/443747/prison-labor-laws-wages>.

9) The Guardian(2015.12.9), "Beyond Cheap Labor: Can Prison Work Programs Benefit Inmates?," Retrieved on January 21st, 2018, <https://www.theguardian.com/sustainable-business/2015/dec/09/prison-work-program-ohsa-whole-foods-inmate-labor-incarceration>.

10) Prison Policy Institute, "Section III: The Prison Economy," Retrieved on January 21st, 2018, <https://www.prisonpolicy.org/prisonindex/prisonlabor.html>.

11) National Review(2017.1.11), "Give Working Prisoners Dignity — and Decent Wages," Retrieved on January 21st, 2018, <http://www.nationalreview.com/article/443747/prison-labor-laws-wages>, <http://www.nationalreview.com/article/443747/prison-labor-laws-wages>.

12) The Economist(2017.3.16), "Prison Labour is a Billion-Dollar Industry, with Uncertain Returns for Inmates," Retrieved on January 21st, 2018, <https://www.economist.com/news/united-states/21718897-idaho-prisoners-roast-potatoes-kentucky-they-sell-cattle-prison-labour>.

13) National Review(2017.1.11), "Give Working Prisoners Dignity — and Decent Wages,"

호하는 법안들인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이나 전국노사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등이 재소자 노동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하여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에 노출될 위험에 놓여 있다.¹⁴⁾

■ 재소자 노동의 사례 : 캘리포니아 주의 재소자 소방 업무 투입

다음으로는 캘리포니아 주의 재소자 소방 업무 투입 사례를 통해 미국 재소자 노동의 실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른 가석방과 약간의 임금을 받는 대가로, 1,700명 이상의 중범죄자들이 2017년 10월에 북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발생한 산불을 막는 소방 업무에 투입되었다. 해당 지역 사회가 대피한 동안, 이 수감자들은 화재를 억제하고 재산 보유자를 보호하는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해 최대 72시간의 교대 근무를 했다. 아직도 남부 캘리포니아 전역에는 수백 곳의 화재 지역이 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의 소방 업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주는 1940년대부터 소방 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소자들을 투입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3,700명이 넘는 남녀 및 일부 청소년 범죄자도 복무한다. 이들은 소방 업무에 참여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들은 주 전역의 산불 퇴치 요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화재 및 기타 비상 사태에 대응하고 공원 유지 관리, 화재 및 홍수 방지와 같은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를 처리하는 데 평균 1천만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이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가뭄과 열기로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의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는 교도소 내 과밀 수용이 재소자들의 건강과 인권에 해가 될 수 있으므로 교도소 재소자 인구밀도를 줄이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주

Retrieved on January 21st, 2018, <http://www.nationalreview.com/article/443747/prison-labor-laws-wages>.

14) The Atlantic(2015.9.21), "American Slavery, Reinvented," Retrieved on January 21st, 2018, <https://www.theatlantic.com/business/archive/2015/09/prison-labor-in-america/406177/>.

정부는 더 많은 재소자들을 소방 업무에 모집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은 여론의 반발로 제대로 실행될 수 없었으며, 결과적으로는 2008년 이후로 재소자 소방관의 수가 13% 감소하였다. 변화하는 수감 정책과 소방에 대한 요구 사이의 밀고 당기기는 조만간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확실하게 2018년 봄으로 예상되는 다음 화재 시즌이 오기 전에는 이 부분이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 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국가 교도소 프로젝트(National Prison Project)의 책임자인 데이비드 패티(David Fathi)는 “교정 당국자들은 수감자가 소방 업무에 지원하도록 무언의 협박을 가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며 “수용자와 고용주 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불평등에 비추어 볼 때 재소자들을 소방 업무에 투입하는 것에 실질적인 착취와 학대의 잠재력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많은 수감자들이 고통스러운 교도소의 생활 조건을 피하기 위해 소방 업무에 지원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수감자들이 화염의 확산을 막는 첫 번째 방어선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들은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불을 내서 연소될 수 있는 물건을 모두 태우는 임무를 담당하도록 훈련된다. 이 일은 매우 위험한 작업으로 분류된다. 올해까지 한 명의 민간인과 함께 두 명의 수감자가 사망한 바 있다.

이렇게 고위험의 작업을 하는 데 비하여 연금, 보상 또는 미래 고용에 대한 약속없이 화재 진화 업무에 투입될 경우 시간당 1달러(최저임금을 받는 민간인의 10분의 1 수준의 임금), 그렇지 않은 경우 하루 2달러로 최대 72시간 교대 근무를 실시한다. 주의 교정 및 재활부(Department of Correction and Rehabilitation)에 따르면, 민간 소방관들을 고용하는 대신 재소자들을 화재 업무에 투입함으로써 매년 1억 달러의 임금 및 보상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¹⁵⁾

15) The Atlantic(2017.12.7), “California Is Running Out of Inmates to Fight Its Fires,” Retrieved on January 21st, 2018, <https://www.theatlantic.com/politics/archive/2017/12/how-much-longer-will-inmates-fight-californias-wildfires/547628/>.

■ 맺음말

이 글에서는 미국의 재소자 노동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 그 법적 근거의 유래와 재소자들의 노동권과 관련한 실태, 그리고 재소자 노동의 실태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의 재소자 노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이들의 노동권은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가 발전된 적이 적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글이 한국의 재소자 노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재소자 노동권에 전반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KLI**